

● 제33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10.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 안 자 : 아이수루 의원(13명 찬성)
- 나. 제 안 일 : 2025. 8. 8.
- 다. 회 부 일 : 2025. 8. 14.
- 라. 의안번호 : 29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기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상 불분명하던 상호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그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의회의 상호결연 등 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상호결연의 원칙 및 상호결연을 통한 교류협력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상호결연 체결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 상호결연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 상호결연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회의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
- (3)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8. 20.(수) ~ 2025. 8. 24.(일) (5일간)
 - 나) 예고결과 : 없음
 -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동의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조례안의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회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활동 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라 한다.)에서 불분명하던 서울특별시회의회의 외국 지방의회와의 상호결연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음.

2 상호결연 체결 절차의 구체화 필요성

-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국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상호결연은 협약 체결이라는 절차를 전제로, 서울특별시의회가 국외 지방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의정 정보 교류 및 상호 방문 등을 하는 교류협력 활동의 한 유형임.
 - ※ 상호결연이라는 용어는 기존 공무국외활동에 조례에서 ‘자매결연’으로 사용되었으나, 2019년 추진된 서울특별시의 인권영향평가 결과 우열을 나타내는 용어를 순화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상호결연’으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음(「서울특별시회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98호, 2020. 10. 5., 일부개정 및 시행)).
-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존 국외 지방의회와의 상호결연을 공무국외활동 조례 및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와 이들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근거로 추진해왔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상호결연 체결 근거와 그 절차를 별도의 조례로 구체화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외교활동으로서 상호결연을 명확히 규정해, 외교 주체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호결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3 조례안의 구조 및 조문별 검토

가. 조례안의 구조

- 본 조례안은 전체 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교류협력 추진시의 의장의 책무, 상호결연의 원칙, 상호결연 체결 및 취소 절차, 그밖에 상호결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문체계 및 구성>

구성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서울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근거 마련 목적 명시
제2조(정의)	교류협력, 상호결연의 정의 규정
제3조(의장의 책무)	교류협력, 상호결연 과정에서의 의장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호결연에 관한 본 조례안 적용의 우선권 명시
제5조(상호결연의 원칙 등)	상호결연시 체결 과정의 유의사항 등 원칙 명시
제6조(상호결연의 체결)	상호결연 체결 절차 및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명시
제7조(상호결연의 취소)	상호결연의 취소가 필요한 상황을 규정
제8조(시행규칙)	그밖에 상호결연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위임

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목적)**는 서울특별시의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결연 등 교류협력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다는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정의)**는 정의를 통해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교류협력, 상호결연에 대해 규정함.

- **(교류협력)**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의회가 다양한 국외 지방의회와 각종 분야에서 교류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음.
- **(상호결연)**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음.
 - 기존 공무국외활동 조례 및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가 별도로 상호 결연을 정의하지 않은 채, 의회 의원들이 수행하는 공무국외활동 적용 범위의 하나로 상호결연의 체결과 관련해 활동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협약 체결’이라는 절차를 통해 협력을 도모하는 상호결연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은 바람직할 것임.

다. 의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안 제3조(의장의 책무)**는 국외 지방의회와의 상호결연 등 교류협력 추진 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고, 교류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시민에게 홍보할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
 -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 발전은 물론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류협력 및 상호결연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한 외교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 것임.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상호결연 체결’에 관해서는 본 조례안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기존 공무국외활동 조례 및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와의 관계에서 ‘상호결연 체결’에 관하여는 본 조례안이 우선됨을 명확히 하였음.

라. 상호결연의 원칙(안 제5조)

- 안 제5조(상호결연의 원칙 등)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국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고(제1항), 상호결연 체결 시의 원칙 및 유의점을 나열하였으며(제2항), 상호결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교류협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제3항).
- 안 제5조제1항은 상호결연의 목적과 체결 근거를 두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역량 강화 목적을 강조하였음.
- 안 제5조제2항은 상호결연 시 고려사항으로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며 특히 국제적 위상의 유사성, 대등한 협력과 우호 가능성,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상호결연 체결과 교류시 이들 기준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할 것임.
- 안 제5조제3항은 교류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해 상호결연을 맺은 후의 제도적 정보 교환, 정책 협력, 상호방문을 통한 실질적 관계 강화 등을 도모하도록 함.

마. 상호결연의 체결 및 취소 절차(안 제6조 및 제7조)

- 안 제6조(상호결연의 체결)는 상호결연의 체결 절차를 구체화하여 상호결연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상대 국외 지방의회의 장이 체결식을 갖고 합의 문서에 서명하여야 하는 성립 원칙을 규정하였음.
- 또한 교류협력 시에 수반될 수 있는 예산 지원 근거를 두어 원활한 상호결연 및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안 제7조(상호결연의 취소)**는 안 제6조에 따라 상호결연 체결 후 교류 단절이나 지속적 교류협력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상호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상호결연을 체결하고 국외 지방 의회와 교류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상호결연 체결 근거와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았던 것을 명확히 규정한 것임.
-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의 국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현황은 15개국 16개 도시로 향후 상호결연 체결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대한 방문 및 초청 등 대상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현황 : 15개국 16개 도시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연번	도시명	국가명	체결일	연번	도시명	국가명	체결일
1	뉴사우스웨일즈	호주	'96.8.28.(4대)	9	아스타나(누르술탄)	카자흐스탄	'05.5.5.(6대)
2	모스크바	러시아	'97.4.1.(4대)	10	방콕	태국	'07.11.26.(7대)
3	멕시코시티	멕시코	'97.4.16.(4대)	11	상파울루	브라질	'11.5.23.(8대)
4	앙카라	튀르키예	'97.7.23.(4대)	12	비슈케크	키르기스스탄	'16.1.14.(9대)
5	바르샤바	폴란드	'97.7.29.(4대)	13	웰링턴	뉴질랜드	'18.1.18.(9대)
6	울란바타르	몽골	'97.8.27.(4대)	14	베이징	중국	'22.9.19.(11대)
7	저장성	중국	'01.3.30.(5대)	15	호놀룰루	미국	'23.10.11.(11대)
8	알마티	카자흐스탄	'01.5.9.(5대)	16	하노이	베트남	'23.12.18.(11대)

-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협정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체결한 상호결연 도시의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시행 이후로는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상호결연도시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회 중심의 독자적 외교 채널을 제도화하도록 힘쓰고 이를 시민에게 명확히 구분해 알려야 할 것임.
- ※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상에는 해외 교류도시로 총 26개국 33개 도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친선도시가 대부분이며 그밖에 의회 간 교류협력 양해각서 교환이나 의회 간 협력 의향서 교환 정도의 불분명한 교류 형태도 포함하고 있음.
- 관련하여,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제정조례안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의회가 국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 제정조례안에 따라 상호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향후 본 제정조례안에 따른 공식적인 의회 간 상호결연과 그밖의 국제교류 현황을 구분해 표현함으로써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상호결연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그간 부재했던 서울특별시의회 상호결연 체결 과정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향후 상호결연 추진 시 상대 기관과의 교섭 과정에 공식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담당 연락처

02-2180-7688